

등록번호	주택정책과-21948
등록일자	2022. 12. 29.
결재일자	2022. 12. 29.
공개구분	부분공개(5)



주무관	주거복지팀장	주택정책과장	도시정책관	도시주택실장
김선영	김태철	정종국	황학용	전결 2022. 12. 29. 홍지선
협 조				

- 道 주거복지 정책 추진 관련 -

2023년 주택개조사업 추진계획 보고



도시주택실
[주택정책과]

- 道 주거복지 정책 추진 관련 -

2023년 주택개조사업 추진계획 보고

◆ 주거취약계층·장애인 등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한 도민의 주거 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2023년도 道 주택개조사업(5건)* 추진계획 보고임.

* 햇살하우징, G-하우징, 중증장애인, 장애인(구 농어촌), 고령자 주택개조사업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주거기본법」 제16조,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제3조 및 제22조,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 사업기간 : 2023년 1월 ~ 12월

○ 사업량 : 938호(햇살하우징 등 5건) 사업별 세부계획 참고

○ 사업비 : 37.9억원(예산사업 4건/798호, 비예산 1건/140호)

○ 추진방식 : 공공기관(GH) 위탁, 민간 및 시·군 직접

사업명	2023년 추진 주택개조사업				
	햇살하우징	G-하우징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장애인(구 농어촌) 주택개조사업	어르신 안전 하우징
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70% 이하 및 복지시설	중위소득 70% 이하, 심한 장애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 장애인	만6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사업량(호) ※()전년도 목표/실적	296 (500/500)	140 (140/173)	120 (180/180)	182 (36/34)	200
사업비 (백만원) ※()전년도예산	1,480 (도비100%) (2,500)	비예산	600 (도비100%) (900)	691.6 (국비50%, 시·군비 50%) (136.8)	1,020 (도비100%)
추진방식	공공(GH) 위탁	민간 직접	공공(GH) 위탁	시·군 직접	공공(GH) 위탁
사업내용	난방비·전기료 절감 등 에너지 효율화 사업 및 냉·난방기 교체 또는 설치	참여업체 자원 및 재능 기부 등을 통한 집수리	장애 상태에 따른 맞춤형 편의시설 설치 및 주거환경개선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해 맞춤형 개선	사회보장제도 협의 완료 후 연내 추진 예정

□ 2023년 추진방식 변경(안)

구분	기존	변경
지원 대상 세분화	저소득 취약계층 및 장애인	고령자 맞춤형 사업 신설 (“어르신 안전 하우스”)
지원요건 완화	5년 이내 수혜자 중복 제외	3년 이내 수혜자 중복 제외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한 계약기간(2년), 개인 사정으로 인한 이사 및 임차인 동의 부담 등의 사유로 신청 불가함을 고려하여 지원요건 완화
공사항목 추가	「햇살하우스」 사업 에어컨 설치 지원	에어컨 설치 항목 추가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지역 확대 시행	농어촌 지역 등록 장애인 대상	경기도 내 전 지역 등록 장애인 대상
홍보 강화	홍보 미비	경기도 공식 블로그·언론보도 및 주거복지포털 통해 적극 홍보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22. 12월 : 추진계획 수립 및 통보(道 → GH, 시·군)
- '23. 1월 ~ 3월 : 사업별 대상자 접수 및 확정(시·군 등 → 道)
- '23. 4월 ~ 6월 : 시공사 선정 및 실태조사
※ G-하우스 및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사전 준비 완료 시 우선 착공
- '23. 6월 ~ 11월 : 공사 추진
- '23. 12월 ~ '24. 1월 : 결과 보고 및 사업 정산
※ 참고자료 별첨(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각 1부)

□ 행정 사항

- (시·군) 2023년 사업 대상자 신청 시 수선유지급여 대상 확인
- (시·군) 2023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확대에 따른 신규 추진
16개 시(市) 사전 절차 이행 철저
- (GH) 2022년 수혜자 하자보수기간 등 하자 관리 사항 안내

- 붙임 1. 소득기준 1부.
2. 연도별 추진 실적 1부.
3. 시·군별 사업 배정량 1부.
4. 지역별 지원현황 각 1부.
5. 추진 절차 1부.
6. 관련 법령 1부.
7. 주택개조사업 지원서식 각 1부. 끝.

- ☐ 법적근거 : 「주거기본법」 제16조 및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제3조
-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 사업대상 : 도 내 31개 시·군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 기타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임대인 동의 必))
- ☐ 사업제외대상
 -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비주택(구조안전 상 수리 불가 포함), 햇살하우징, 장애인·중증장애인 주택개조, G-하우징(500만원 이상) 3년 이내 수혜자
- ☐ 선정절차 : 시·군별 배정량 및 소득 수준 등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선정
 - ※ 대상자 중도 포기 등으로 공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량의 50%를 예비대상자로 선정하고 당해 사업 수혜 불가 시 차기년도 이월 후 우선 지원
- ☐ 사업량 : 296호
- ☐ 사업비 : 1,480백만원(도비 100%)
- ☐ 사업내용 : 난방비·전기료 절감을 위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 및 냉·난방기 설치·교체 등
 - (난방비) 기밀성 창호 및 문으로 교체, 벽체 내단열 보강, 보일러 교체
 - (전기료)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기기로 교체
 - (냉·난방기 설치·교체)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 또는 교체
 - ※ 기타 도배, 장판, 싱크대, 화장실, 백색도기류, 신발장 등 주택 내 시설 등
 - ※ 지붕·바닥의 방수 및 누수 공사 제외
- ☐ 추진일정
 - 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22. 12월(道)
 - 사업 대상자 접수 및 확정 : 2023. 1월 ~ 3월(시·군 등 → 道)
 - 시공사 선정, 에너지 효율진단 및 실태조사 : 2023. 4월 ~ 6월(GH)
 - 공사 시행 : 2023. 6월 ~ 12월(GH)
 - 참여업체 등 유공자에 대한 도지사 표창 : 2023. 12월(道)
 - 사업 결과 보고 : 2024. 1월(GH → 道)

-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 사업대상 :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 또는 복지시설 등
 - ※ 기타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임대인 동의 必))
- ☐ 사업제외대상
 - 햇살하우징, 장애인·중증장애인 주택개조, G-하우징(500만원 이상)
3년 이내 수혜자
- ☐ 사업량 : 약 140호
- ☐ 사업비 : 비예산 사업
- ☐ 참여단체 : GH, 대한주택건설협회 및 민간단체, 건설회사 등
- ☐ 사업내용 : 참여업체 자원 및 재능 기부 등 봉사를 통한 집수리
 - 유형① : 참여 업체가 개보수 용역 발주
 - 유형② : 재능·자원을 직접 활용하여 공사 시행
 - 유형③ : 복지기관에 기부 후, 복지기관에서 공사 시행
- ☐ 추진일정
 - 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22. 12월(道)
 - 참여업체 파악 : 2023. 1월 ~ (道, 시·군 등)
 - 지원대상 파악 : 2023. 1월(시·군 등)
 - 지원대상 현지조사 : 2023. 3월(道, 시·군, 참여업체)
 - 공사 시행 : 2023. 4월 ~ (참여업체)

- **법적근거**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제3조, 제22조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사업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중위소득 70% 이하인 가구
 - ※ 임차인 포함(임대인 동의 必)
 - ※ 임대주택 거주자의 경우 수혜자 되거 시 별도 원상복구 계획 없음 사전 고지 후 관리사무소·LH 동의 必, 토지소유주와 주택소유주가 다르면 소유주 모두의 동의 必
- **선정기준** : 시·군별 배정량, 장애의 정도 및 소득 수준 등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선정
 - ※ 대상자 중도 포기 등으로 공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량의 50%를 예비대상자로 선정하고 당해 사업 수혜 불가 시 차기년도 이월 후 우선 지원
- **사업제외대상**
 -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비주택(구조안전 상 수리불가 포함), 햇살하우징, 장애인·중증장애인 주택개조, G-하우징(500만원 이상) 3년 이내 수혜자
- **사업량** : 120호
- **사업비** : 600백만원(도비(주거복지기금) 100%)
- **사업내용** : 장애상태에 따른 맞춤형 편의시설 설치 및 주거환경개선
 - (지원항목) 출입문, 바닥, 비상연락장치, 욕실, 싱크대 등 주택 내 편의시설 및 주거환경개선 항목(도배, 장판, 간단수리, 청소, 단열 등)
 - (예외허용) 옥외 화장실, 출입구(경사로, 손잡이 등) 등에 한한 주택 외부시설
 - ※ 지붕·바닥의 방수 및 누수 공사 제외
- **추진일정**
 - 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22. 12월(道)
 - 사업 대상자 접수 및 확정 : 2023. 1월 ~ 3월(시·군 등 → 道)
 - 시공사 선정 및 실태조사 : 2023. 4월 ~ 6월(GH)
 - 공사시행 : 2023. 6월 ~ 12월(GH)
 - 사업결과보고 : 2024. 1월(GH → 道)

□ 법적근거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사업대상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장애인

□ 사업제외대상

-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주택 개조 비용융자를 추천하여 개조 지원을 받은 자 및 유사한 주거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

※ 다만,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지원 가능

□ 사업량 : 182호

< 시·군별 배정 물량 >

(단위 : 호)

시·군	물량	시·군	물량	시·군	물량	시·군	물량	시·군	물량
수원시	15	용인시	8	고양시	13	성남시	5	화성시	12
부천시	0	남양주시	5	안산시	13	평택시	10	안양시	5
시흥시	5	김포시	3	파주시	3	의정부시	9	광주시	7
광명시	5	하남시	5	군포시	5	오산시	7	양주시	3
이천시	5	구리시	10	안성시	4	의왕시	0	포천시	4
양평군	3	여주시	4	동두천시	10	과천시	0	가평군	2
연천군	2								

※ 시·군 수요조사 및 국토교통부 확정내시 반영

□ 사업비 : 691.6백만원(국비 50% : 시·군비 50%)

□ 사업내용 :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 편의를 위해 맞춤형 개선, 지원 대상 주택 내부시설 외에 일부 외부시설 포함

※ 주택 내의 편의시설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대지 내의 주택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출입로·경사로 보수·설치, 외부 화장실 개보수 및 주택 내부 신규 설치 등 포함

※ '22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업무처리지침 참고

□ 추진일정

○ 업무처리지침 통보 : 2023. 3월(국토교통부 → 道 → 시·군)

○ 시·군 계획수립 및 대상가구 선정 : 2023. 4월 ~ 5월

○ 시·군 사업자 선정 등 사업 시행 : 2023. 6월 ~ 11월

○ 사업 결과 보고 : 2023. 12월 ~ (시·군 → 道)

○ 정산·결산서 제출 : 2024. 1월(시·군 → 道 → 국토교통부)